

연구자료
센터 92-3-5

진폐 건강진단 제도 및 시행 실태

1992. 8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머 리 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병이 진폐증이란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진폐증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84년 말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은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1986년 1차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노동부로부터 본 연구원에 의뢰되어 수행하게된 것입니다.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는 사회적 인 여건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형평, 과학적인 면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고서가 이와같은 전문적인 연구의 개선 방향을 정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분진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92. 8

연구 책임자: 정 호 근

공동 연구자: 홍 정 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장 정 규 철

목 차

머리말	iii
표 목차	vi
그림 목차	viii
 1. 서론	 1
 2. 조사 방법	 3
2.1. 현행 진폐 건강진단 관련 법규에 관한 조사	3
2.2. 진폐 건강진단의 실시 실태	4
 3. 진폐 건강진단 관련 법규	 6
3.1. 진폐 건강진단 관련 법규의 종류 및 내용	6
3.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3.1.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3.1.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3.1.4. 진폐 업무 처리 규정	7
3.1.5. 진폐 건강진단 수가 고시	7
3.1.6. 진폐 건강진단 실무 지침	8
3.2. 진폐 건강진단의 종류	8
3.2.1. 진폐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목적	8
3.2.2. 각 건강진단을 정하고 있는 법규	10

3.2.3. 진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10
3.2.4. 진폐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12
3.3. 관련 법규상 진폐 건강진단의 절차	12
3.3.1. 법	12
3.3.2. 시행규칙	13
3.3.3. 예규	15
3.4. 진폐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15
3.4.1. 일반 검사	17
3.4.2. 흉부 임상검사	18
3.4.3. 심폐기능 검사	18
3.4.4. 결핵 정밀검사	21
3.4.5. 결핵 이외의 합병증 검사	22
3.4.6. 기타 검사	23
4. 진폐 건강진단 기관의 건강진단 실시 실태	24
4.1. 조사 대상 기관의 일반적 사항	24
4.2. 진폐 건강진단 기관 인정 기준에 대한 실태	25
4.2.1. 인력	25
4.2.2. 시설	26
4.2.3. 기계 및 기구	26
4.3. 건강진단 검사 항목의 실시	27
4.3.1.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28
4.3.2. 정밀진단	29
4.4. 진폐 정밀진단 기간	31
5. 토의 - 진폐 건강진단 시행의 문제점	34
5.1. 진폐 건강진단을 규정하는 법규	34

5.2. 정밀진단의 대상	34
5.3.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35
5.4.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35
5.4.1. 건강진단 검사 항목의 고시	35
5.4.2. 건강진단 검사 항목에 관한 시행규칙과 고시간의 차이	35
5.4.3. 검사 항목	36
5.5. 진폐판독위원회	40
5.6. 폐기능 검사의 실시	40
5.7. 진단 기관의 수익 및 수가 고시	41
5.8. 병력 확인	42
5.9. 진폐 건강진단 기관의 지정 기준	43
5.9.1. 1차 진폐 건강진단 기관의 지정 기준	44
5.9.2. 2차 진폐 건강진단 기관 지정 기준	45
 6. 요약	 47

표 목 차

표 1. 진폐 건강진단의 종류와 정하고 있는 법규	10
표 2. 진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11
표 3. 진폐 건강진단 종류별 실시 시기	13
표 4. 건강진단별 검사 항목의 비교	17
표 5. 건강진단별 흉부 임상검사 대상 및 검사 항목	19
표 6. 건강진단별 심폐기능 검사 항목의 비교	20
표 7. 건강진단별 결핵 정밀검사 항목의 비교	21
표 8. 건강진단별 결핵 이외 합병증 검사 항목의 비교	22
표 9. 조사 대상 기관의 소재지 및 검진 지역	24
표 10. 진폐 건강진단 기관의 인력 기준	25
표 11. 진폐 정밀진단 기관의 인력 확보 실태	26
표 12. 진폐 건강진단 기관의 기계 및 기구 기준	27
표 13. 수가 고시에 의한 진폐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검사 항목(1992년)	28
표 14. 수가 고시에 의한 진폐 정밀진단 검사 항목(1992년)	30
표 15. 요일별 정밀진단 일정 및 검사 항목	32

그림 목 차

그림 1. 시행규칙상 진폐 건강진단의 흐름도	14
그림 2. 예규상 진폐 건강진단의 흐름도	16

1. 서 론

진폐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직업병이며 폐결핵 등 합병증의 이환 위험이 높은 병이기도 하다. 또한 진폐증은 아직도 확실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으로 한번 이환되면 원인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다. 그러므로 진폐증에 대하여는 예방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84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이래 1990년 2차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시행령은 1985년 제정되어 1987년 2차로 개정된 사항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규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85년 6월 제정되어 1986년 8월 1차 개정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진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폐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구분을 정하여 이 관리구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진폐증의 악화를 방지하고 진폐와 동반한 합병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 치료를 할 목적으로 정기 건강진단, 이직자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관리구분 판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 건강진단과 이직자 건강진단 그리고 임시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 건강진단들을 통하여 유소견자로 발견된 사람에 대한 관리구분을 위한 진단이나 검사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노동부의 예규로 정하여 실시되고 있다.

시행규칙은 1985년에 제정되어 1986년 1차 개정된 이래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그 시행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고 진폐 관리구분을 위한

진단이나 검사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행규칙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하위의 규정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한 개선이 요망된다.

따라서 본 조사는 현재 진폐 건강진단과 관련된 법규와 정밀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조 사 방 법

분진작업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진폐 건강진단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하고 있는 8 개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진폐 건강진단의 제도와 그 제도에 따른 실행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진폐 건강진단에 관한 제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정하고 있는 법규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 건강진단 제도의 실행에 대하여는 건강진단 기관의 실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도상의 문제점과 건강진단 실시의 문제점 그리고 건강진단의 실시와 제도간의 모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항목과 내용 및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2.1. 현행 진폐 건강진단 관련 법규에 관한 조사

현행 진폐 건강진단 제도를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법규 및 고시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4112호, 개정 1989. 4. 1.)

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노동부령 제 35호, 개정 1986. 8. 27.)

다. 진폐 업무 처리 규정(노동부 예규 제 204호, 제정 1991. 10. 25.)

라. '92 진폐 건강진단 수가(노동부 고시 제 1992-7호, 1992. 3. 25.)

아. 진폐 건강진단 실무 지침(노동부, 1991. 11.)

각 법규 및 고시, 지침으로부터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진폐 건강진단의 종류
- 나. 진폐 건강진단의 종류별 대상
- 다. 진폐 건강진단의 종류별 건강진단 검사 항목
- 라. 진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 마. 관련 법규간의 모순점
- 바. 관련 법규의 문제점

2.2. 진폐 건강진단의 실시 실태

1992년 3월 진폐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중 전국 8개의 2차 진폐 정밀진단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였다.

- 가. 진폐 건강진단의 종류별 검사 항목
- 나. 인력 기준에 관한 실태 및 의견
- 다. 시설 기준에 관한 실태
- 라. 기계 기구 기준의 실태
- 마. 진폐 정밀진단을 위해 입원한 자의 요일별 검사 항목

이상의 진폐 건강진단 실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폐 건강진단 실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조사한 2차 진폐 정밀진단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근로복지공사 동해병원
- 나. 근로복지공사 순천병원

- 다.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
- 라. 근로복지공사 정선병원
- 마. 의료법인 남광병원
- 바. 의료법인 문경병원
- 사. 의료법인 보령병원
- 아. 의료법인 밀양영남병원

3. 진폐 건강진단 관련 법규

3.1. 진폐 건강진단 관련 법규의 종류 및 내용

3.1.1.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의 내용 중 건강진단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진폐심사의에 관한 것으로서 진폐 관리구분의 판정 기타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심사의를 두도록 되어 있다.

나. 건강진단의 종류와 대상 및 시기

다. 건강진단 결과의 통지 및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마. 진폐 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3.1.2.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의 내용 중 진폐 건강진단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제 10조의 진폐심사의에 관한 조항으로 진폐심사의의 자격, 인원 그리고 임무 등을 다루고 있으며, 건강진단의 종류나 시기 등과 같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3.1.3.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진단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건강진단의 종류에 따른 검사 항목, 방법과 대상
- 나. 건강진단 기관의 지정 기준
- 다. 건강진단 비용의 결정 방법과 고시 시기

3.1.4. 진폐 업무 처리 규정

본 규정 중 진폐 건강진단과 관련이 있는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진폐심사의의 근무 형태 및 자격 등
- 나. 응급 및 정밀진단 대상의 판정 기준과 결정 방법
- 다. 진폐 관리구분의 판정 기준
- 라. 건강진단시 준수 사항
- 마. 정밀진단시 흉부 엑스선 촬영의 종류와 방법
- 바. 심폐기능 검사 항목
- 사. 건강진단 기관의 지정 조건
- 아. 건강관리 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실시 절차

본 규정의 조항 중 응급 및 정밀 진단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건강진단의 종류라는 점이 특징이다.

3.1.5. 진폐 건강진단 수가 고시

당해 연도 건강진단의 종류에 따른 검사 항목, 각 검사 항목의 수가와 입원비 등이 고시되어 있다.

3.1.6. 진폐 건강진단 실무 지침

법을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예규 등에서 정한 진폐 건강진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진폐 건강진단의 절차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지방노동관서 및 진폐 건강진단 의료기관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령 및 예규에서 정한 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3.2. 진폐 건강진단의 종류

3.2.1. 진폐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목적

진폐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채용시 건강진단, 정기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이직자 건강진단 그리고 정밀진단과 응급진단이 있으며 그 실시 목적은 다음과 같다.

3.2.1.1. 채용시 건강진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의 취업 대상자 중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진폐의 소견이 있는 취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진폐 관리구분에 따라 적절한 작업에 배치함으로써 재직하는 동안 특별히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2.1.2. 정기 건강진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진폐증 이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폐 관리구분을 결정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진폐증의 악화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3.2.1.3. 이직자 건강진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가 일정 기간 작업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에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진폐증이나 병발된 합병증이 계속 진행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후에 발병되는 것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2.1.4. 임시 건강진단

합병증으로 인하여 요양차 휴직하였던 근로자가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실시하거나, 진폐 관리구분의 판정을 이미 받은 근로자가 판정 당시보다 진폐가 악화되었거나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 그 정도를 확인하여 진폐 관리구분을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2.1.5. 진폐 정밀진단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폐 관리구분의 판정 및 장해 등급의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다.

3.2.1.6. 응급진단

응급 소견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정밀진단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하고 정밀진단을 의뢰하는 것으로 정밀진단의 목적과 동일하다.

표 1. 진폐 건강진단의 종류와 정하고 있는 법규

건강진단의 종류	정하고 있는 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지침
채용시 건강진단	○		○	○	○
정 기 건강진단	○		○	○	○
임 시 건강진단	○		○	○	○
이직자 건강진단	○		○	○	○
정 밀 진 단				○	○
응 급 진 단				○	○

3.2.2. 각 건강진단을 정하고 있는 법규

진폐 건강진단 중 채용시 건강진단이나 정기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그리고 이직자 건강진단은 이 법의 시행령을 제외한 법 및 시행규칙, 그리고 예규와 진폐 건강진단 실무 지침 등 진폐 건강진단을 정하고 있는 모든 법규에서 그 실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정밀진단과 응급진단은 시행규칙 이상의 법규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예규와 지침에서만 정하고 있다(표 1).

따라서 진폐 건강진단의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인 진폐 관리구분을 위한 건강진단인 정밀진단을 시행규칙 이상의 법규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3.2.3. 진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진폐 건강진단의 종류별 대상은 표 2와 같다. 또 각 건강진단에 따라 그 건

표 2. 진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건강진단의 종류	대 상
채용시 건강진단	분진작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정 기 건강진단	시행규칙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 시 건강진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자 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자
이직자 건강진단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정 밀 진 단	정기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이직자 건강진단 결과 유 소견자로 진단되어 진폐판독위원회에서 정밀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자
응 급 진 단	검진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응 급 소견이 있다고 진단된 자 1. 활동성 폐결핵이 병발된 자로서 결핵균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되거나 구별되지 못한 상태로 진단된 자 2.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심폐기능에 현저한 기능 장애가 있어서 적극적인 요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병발된 폐결핵, 결핵성 흉막염, 속발성 기관지염, 속발성 기관지 확장증, 속발성 기흉 등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진폐증이 있는 자로서 이로 인한 임상증상(호흡곤란, 기침, 객담, 전신 쇠약 등)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된 자

* 노동부에서 정한 사유(시행규칙 제 10조의 2)

1. 진폐 근로자의 질병이 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강진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채용시 건강진단이나 임시 건강진단을 수진한 사람은 정기 건강진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아 진폐 관리구분의 판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사람은 이직자 건강진단에서 제외된다.

임시 건강진단의 대상자에 있어서 제외되는 조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밀진단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가. 초진자로서 진폐증의 소견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자

나. 과거 정밀진단시 진폐 병형에 비교하여 진폐 병형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합병증의 소견이 없다고 인정된 자

다. 과거 정밀진단을 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단서 규정에 의한 응급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2.4. 진폐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진폐 건강진단 실시 시기에 관하여 정기 건강진단은 실시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매년 1회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임시 건강진단과 이직자 건강진단은 건강진단 수진 조건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때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밀진단의 실시 시기는 시행규칙상에는 진폐심사의가 의뢰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예규와 지침에서는 진폐판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정하여 진단 기관에 통보하는 시기로 되어 있다(표 3).

3.3. 관련 법규상 진폐 건강진단의 절차

3.3.1. 법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건강진단 검사 항목과

흉부 방사선 직촬 및 흉부 임상검사, 폐기능 검사 등 호흡생리 검사 및 결핵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진폐의 소견이 있는 경우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통하여 진폐심사의가 관리구분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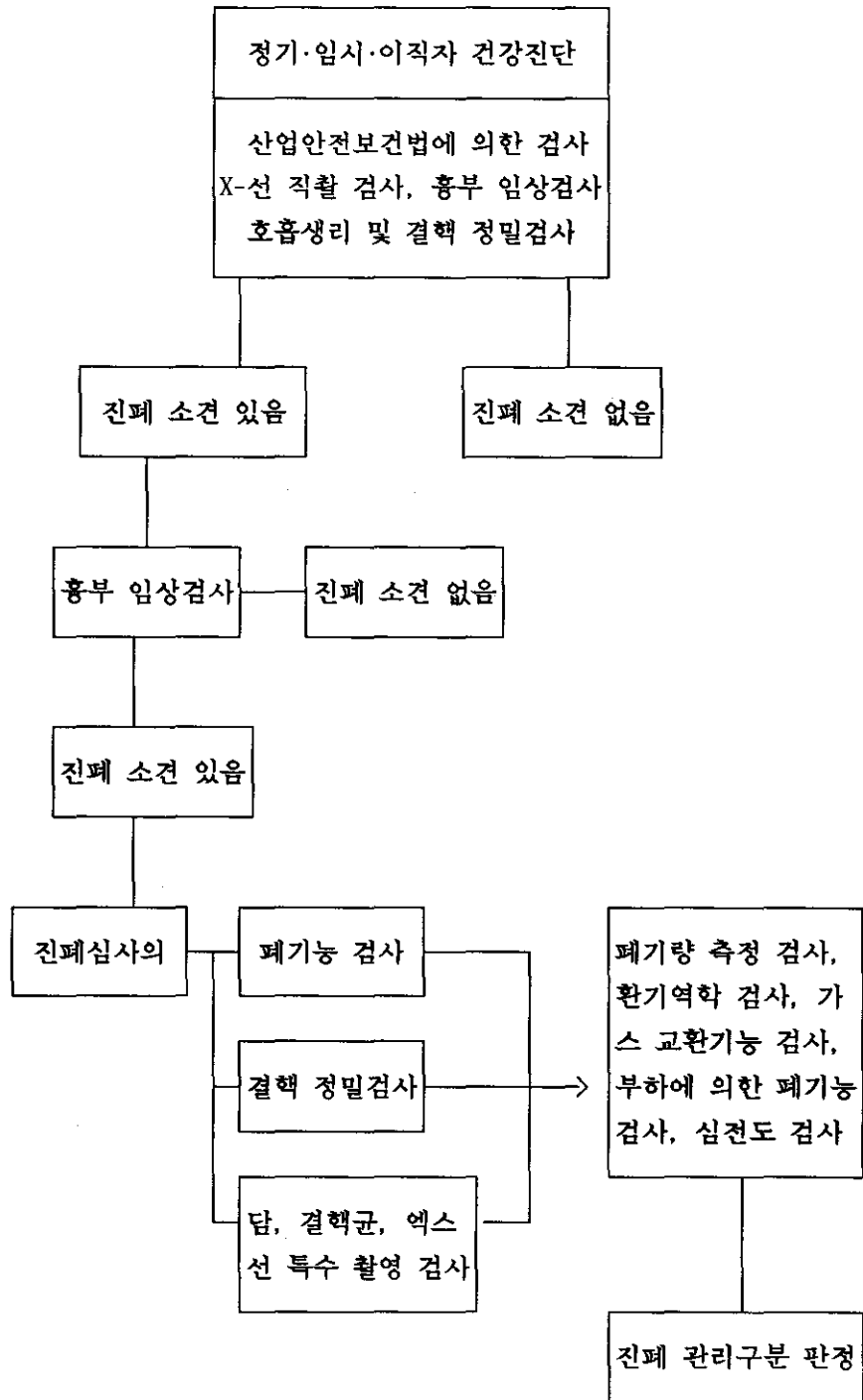
표 3. 진폐 건강진단 종류별 실시 시기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 시기
정기 건강진단	매년 1회 이상
임시 건강진단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 이 가능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때, 전문의에 의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이직자 건강진단	이직자가 신청한 때
정밀진단	심사의가 의뢰한 때(시행규칙)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의뢰할 때(예규, 지침)

3.3.2. 시행규칙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건강진단 검사 항목과 흉부 방사선 직촬 및 흉부 임상검사, 폐기능 검사 등 호흡생리 검사 및 결핵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진폐의 소견이 있는 경우 흉부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는 경우, 진폐심사의가 흉부 임상검사, 심폐기능 검사, 결핵 정밀검사, 담, 결핵균 및 엑스선 특수 촬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검사를 마친 자에 대하여 진폐심사의가 폐기량 측정 검사, 환기역학 검사, 가스 교환기능 검사 및 부하에 의한 폐기능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진폐 관리구분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상 진폐 건강

그림 1. 시행규칙상 진폐 건강진단의 흐름도



진단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3.3.3. 예규

예규에서는 진폐 건강진단 중 정밀진단 및 응급 정밀진단의 절차만을 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정밀진단 대상의 선정은 법(제 10조 내지 제 12조)에서 정한 정기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이직자 건강진단 결과 진폐 유소견자로 진단된 사람에 대하여 진폐판독위원회에서 정밀진단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정밀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초진자로 진폐증이 아님이 확실한 사람, 과거 정밀진단시 진폐 병형과 비교하여 진폐 병형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합병증의 소견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와 과거 정밀진단을 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때 진폐 병형 변화의 판단과 정밀진단 수진 후의 기간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병력의 확인에 의해 정한다. 단,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 소견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이와같은 정밀진단 대상 여부의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정밀진단 의뢰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진폐판독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를 진단 의료기관에 의뢰한다.

예규상 진폐 건강진단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3.4. 진폐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진폐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건강진단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하고 있는 법규에 따라서도 항목의 용어나 크게 분류된 검사 항목의 구체적인 검사 내용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크게 분류된 건강진단 검사 항목별로 관련된 법규나 지침, 고시에 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검사 항목을 비교하였다.

그림 2. 예규상 진폐 건강진단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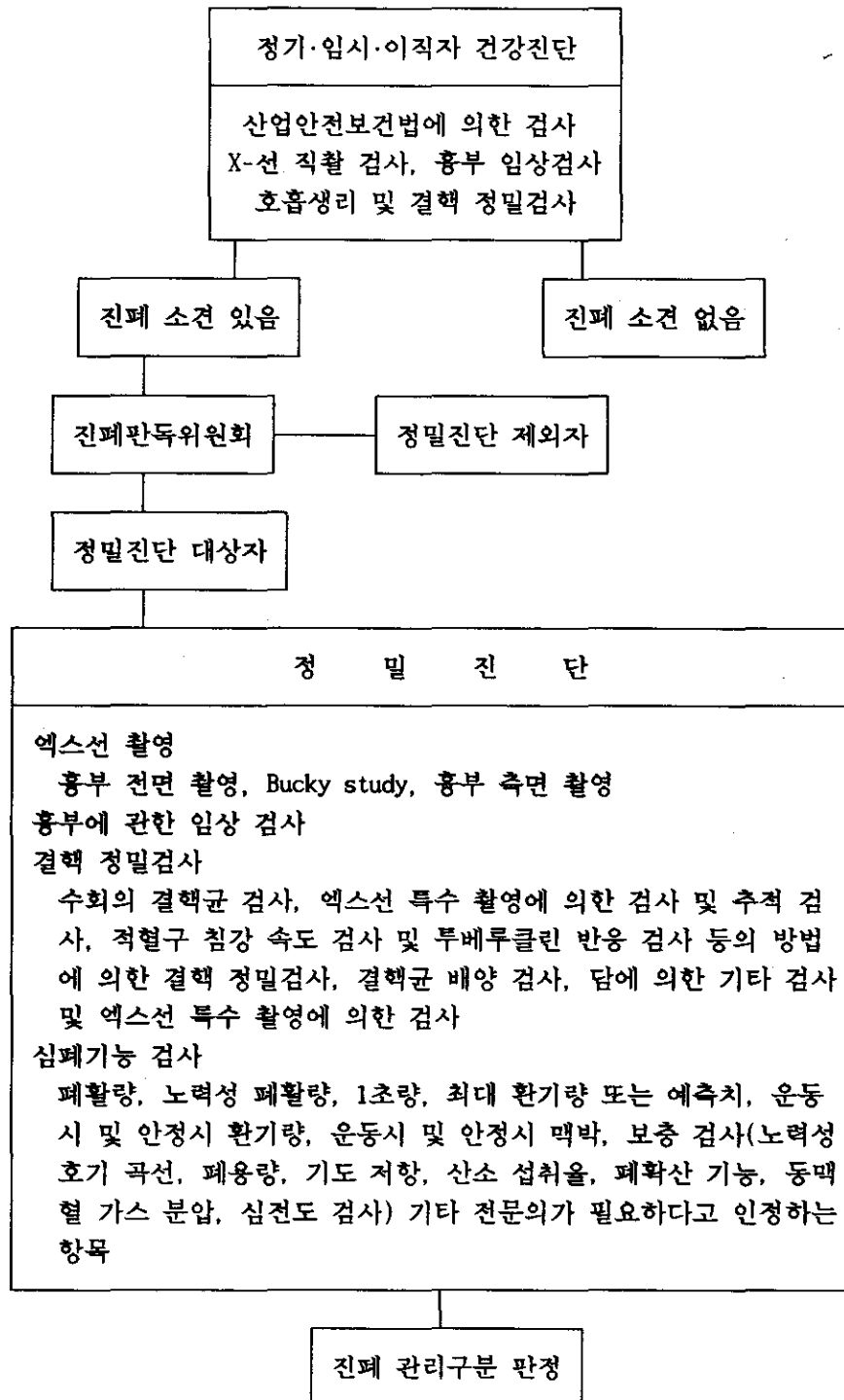


표 4. 건강진단별 검사 항목의 비교

건강진단의종류		
법규별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정밀진단
시행규칙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증상, 타각증상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빈혈 검사 -체중, 시력 및 청력 -GOT, GPT, γ -GTP -총콜레스테롤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	정하고 있지 않음
예규	정하고 있지 않음	정하고 있지 않음
지침	정하고 있지 않음	정하고 있지 않음
고시	-문진, 시진, 일반검사 -노당, 노단백 -헤마토크리트 -혈당, 총콜레스테롤 -GOT, GPT -청력검사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

3.4.1. 일반 검사

일반 검사 항목은 수진자에 따라 구별되는 검사 항목이 아니고 그 건강진단

의 수진대상이 되는 사람은 모두 검사를 받는 검사 항목이다. 단, 이 일반 검사 항목 중 γ -GTP만은 예외로써 연령의 제한을 두어 35세 이상의 사람만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당해 연도의 건강진단 수가 고시에 의하여 항목이 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을 정하는 것은 시행규칙과 건강진단 수가 고시로 볼 수 있다.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에 있어서 1992년도 수가 고시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검사 항목을 비교할 때 시행규칙에서는 빈혈 검사에 대하여 항목은 있으나 검사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고시에서는 빈혈 검사로서 헤마토크리트(hematocrit)를 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γ -GTP를 35세 이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가에는 고시하지 않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표 4).

3.4.2. 흉부 임상검사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의 흉부 임상검사의 대상과 내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만, 정밀진단의 흉부 임상검사에 대하여는 지침에서만 정하고 있다. 정밀진단 수진자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내용은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에서와 같다(표 5).

3.4.3. 심폐기능 검사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의 심폐기능 검사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만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검사 항목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 용어도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 11조 제 1항 제 2호의 '스파이로메트리'와 '프로볼륨곡선'은 각각 폐용량 검사와 기류-용적 곡선이란 용어로 바꾸어 사용되어야 하며 폐기능 검사 장치에 의한 검사 항목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시행규칙 제 11조 제 1항 제 5호의 검사 항목 중 폐기량 측정 검사, 환기

역학 검사, 가스 교환기능 검사는 활용 빈도가 낮은 검사이며 특수 장치와 기술을 요하는 검사이므로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여 다룰 필요성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표 5. 건강진단별 흉부 임상검사 대상 및 검사 항목

건강진단의 종류		
법 규 별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정밀진단
시행규칙	대상: 일반 검사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 한다. 검사항목: 기왕력, 흉부 자각 증상 및 타각 소견의 유무 등	정하고 있지 않음
예 규	정하고 있지 않음	정하고 있지 않음
지 침	정하고 있지 않음	대상: 전체 수진자 검사항목: 기왕력, 흉부 자각 증상 및 타각 소견의 유무 등
고 시	정하고 있지 않음	정하고 있지 않음

정밀진단에서의 폐기능 검사에 관하여는 예규와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데, 검사 항목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예규에서는 폐기능 검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침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시 폐기능 검사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표 6).

표 6. 건강진단별 심폐기능 검사 항목의 비교

건강진단의 종류		
법 규 별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정밀진단
시행규칙	1. 스파이로메트리 및 프로볼륨 곡선에 의한 검사와 동맥혈 가스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심폐기능 검사 2. 폐기량 측정검사, 환기역학 검사, 가스 교환기능 검사, 부하에 의한 폐기능 검사 3. 심전도 검사	정하고 있지 않음
예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함	1. 폐활량 및 노력성 폐활량 2. 1초량 3. 최대 환기량 또는 예측치 4. 운동시 및 안정시 환기량 5. 운동시 및 안정시 맥박 6. 보충 검사(노력성 호기곡선, 폐용량, 기도 저항, 산소 섭취율, 폐확산 기능, 동맥혈 가스 분압, 심전도 검사) 7. 기타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지 침	정하고 있지 아니함	1. 폐기량 측정검사, 환기역학 검사, 가스 교환기능 검사 또는 부하 검사 등 2. 심전도 검사 3. 동맥혈 산소포화도 측정검사

표 7. 건강진단별 결핵 정밀검사 항목의 비교

건강진단의 종류		
법 규 별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정밀진단
시행규칙	1. 결핵균 검사 2. 엑스선 특수 촬영에 의한 검사 3. 적혈구 침강 속도 검사 4.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예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함	1. 수회의 결핵균 검사, 엑스선 특수 촬영에 의한 검사 및 추 적검사, 적혈구 침강속도 검 사 및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결핵 정밀 검사 2. 결핵균 배양 검사(필요시)
지	침 정하고 있지 아니함	객담 검사
고	시 정하고 있지 아니함	항산균 도말 검사, 항산균 배양 및 동정 검사(필요시)

3.4.4. 결핵 정밀검사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의 결핵 정밀검사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만 정하고 있다.

결핵 정밀검사의 대상은 흉부 임상검사 결과 진폐증의 소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폐결핵에 걸려 있거나 걸려 있을 의심이 있다고 진폐심사의가 진단하는 자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 11조 제 3항). 또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핵 정밀검사 항목 중 결핵균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 방법이 구

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투베루클린 반응 검사는 결핵 이환 진단의 검사 항목으로는 특이도가 낮은 검사이므로 실시의 필요성이 매우 적다.

정밀진단에 있어서의 결핵 정밀검사는 예규, 지침, 고시에서 그 검사 항목을 다루고 있다(표 7). 그러나 각각의 법규에서 정한 검사의 내용이 상이하여 일치가 필요하다.

3.4.5. 결핵 이외의 합병증 검사

결핵 이외의 합병증 검사의 대상 및 목적에 관하여 시행규칙에서는 진폐의 소견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결핵 이외의 질병이 합병되거나 합병의 의심이 있다고 진폐심사의가 진단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예규에서는 비결핵성 합병증의 유무를 구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핵 이외의 합병증 검사는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만 다루고 있으며 정밀진단에 대하여는 예규와 고시에서 다루고 있다(표 8).

표 8. 건강진단별 결핵 이외 합병증 검사 항목의 비교

건강진단의종류		
법규별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정밀진단
시행규칙	담에 관한 검사, 결핵균 검사, 엑스선 특수 촬영에 의한 검사	
예규	정하고 있지 않음	담에 의한 기타 검사 및 엑스선 특수 촬영에 의한 검사
고시	정하고 있지 않음	단층상 촬영

그러나 시행규칙과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이 검사의 항목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고시에서는 시행규칙이나 예규에서와는 달리 엑스선 특수 촬영에 의한 검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3.4.6. 기타 검사

고시에서는 정밀진단시 면역 혈청 검사로 류마토이드 인자의 정량검사를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며 폐디스토마에 대한 피내 반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4. 진폐 건강진단 기관의 건강진단 실시 실태

4.1. 조사 대상 기관의 일반적 사항

본 조사는 진폐 정밀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9개 의료기관 중 서울, 성남 그리고 인천을 검진지역으로 하고 있는 서울 소재 가톨릭대학 부속 성모병원을 제외한 8개 기관이었다. 이 중 4개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사 산하의 기관이었으며 4기관이 의료법인이었다. 조사된 진폐 정밀진단 기관은 소재별로는 강원도가 3 기관, 서울 1 기관, 전남 2 기관, 그리고 경북, 경남, 충남이 각 1 기관씩이었다. 또한 각 진단기관의 검진 대상 지역은 표 9와 같다.

표 9. 조사 대상 기관의 소재지 및 검진 지역

기 관 명	소 재 지	검 진 지 역
근로복지공사 동해병원	강원도 동해시	강릉, 포항, 울산
근로복지공사 순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전주, 이리, 여수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	강원도 태백시	춘천, 태백, 원주
근로복지공사 정선병원	강원도 정선군	영월
의료법인 남광병원	광주직할시	광주
의료법인 문경병원	경상북도 점촌시	영주, 안동
의료법인 보령병원	충청남도 보령군	대전, 보령
의료법인 밀양영남병원	경상남도 밀양시	마산

출처: 노동부, 진폐 건강진단 실무 지침, 1991

4.2. 진폐 건강진단 기관 인정 기준에 대한 실태

4.2.1. 인력

진폐 건강진단 기관의 인력 기준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진폐 건강진단 기관의 인력 기준

인 력 기 준	인 원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1인 이상
방사선 전문의	1인 이상
결핵 전문의 또는 결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1인 이상
방사선 기사	1인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인 이상
임상병리사	1인 이상

출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이 인력 기준에 대하여 모든 진단기관이 방사선 기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인력은 기준 이상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기준에 대하여는 조사된 8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예방의학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 중 1 기관은 비상근이었고 나머지 4 기관은 결핵과나 내과 전문의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예방의학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는 5개 기관의 경우 예방의학 전문의의 역할은 주로 1차 진폐 건강진단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1 기관의 예방의학 전문의만이 2차 진폐 건강진단을 담당하고 있었다. 방사선과 전문의는 8개 기관

중 1개 기관이 미비하였으며 나머지 7개 진단기관이 1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결핵 전문의 또는 결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는 3개 기관이 결핵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개 기관은 주로 내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었다(표 11).

표 11. 진폐 정밀진단 기관의 인력 확보 실태

인 력	확보기관/조사기관
예방의학 전문의	5*/8
방사선 전문의	7/8
결핵 전문의	3/8
방사선 기사	8/8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8/8
임상병리사	8/8

* 5개 기관 중 1기관은 비상근임

4.2.2. 시설

시설 기준인 진료실, 엑스선 촬영실, 방음실, 화학 실험실은 모든 진단기관이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방음실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차음 효과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없이 형식적인 방음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었다.

4.2.3. 기계 및 기구

진폐 건강진단 기관의 인정 기준 중 기계 및 기구 기준은 표 12와 같다.

표 12. 진폐 건강진단 기관의 기계 및 기구 기준

시력 검사기
청력 검사기
엑스선 촬영기
심폐기능 검사기
결핵균 검사에 필요한 배양기
결핵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타 기구 및 소모품 등
자동 혈액가스 분석기(혈중 산소량 측정)
심전도기(심리적 안정 상태, 폐 및 유관 기관과의 기능 상태 분석)
호흡가스 분석기

출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이 기계 및 기구 기준에 대하여 호흡 가스 분석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 및 기구는 모든 기관이 병원으로서의 기본적이면서 자주 사용하는 기자재이므로 갖추고 있었다. 호흡 가스 분석기는 8개 기관 중 2개 기관만이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기관의 분석기는 상태가 불량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부분의 기관이 호흡 가스 분석기의 정확한 성능이나 정의 또는 사용 목적 등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4.3. 건강진단 검사 항목의 실시

진폐 건강진단 검사 항목은 시행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검사 항목과는 달리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건강진단 수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4.3.1.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노동부의 1992년도 진폐 건강진단 수가 고시(노동부 고시 제 92-7호)에 의한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검사 항목은 표 13과 같다.

표 13. 수가 고시에 의한 진폐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검사 항목(1992년)

분 류	검 사 항 목
기본 진료	문진, 시진, 일반 검사
요 일반 검사	요당, 요단백
혈액검사	헤마토크리트
혈당 정량	
총콜레스테롤 정량	
S.G.O.T.	
S.G.P.T.	
기능 검사	표준 순음 청력검사(4,000Hz)
방사선 진단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

출처: 노동부 고시 제 92-7호, '92 진폐 건강진단 수가.

조사된 진폐 건강진단 기관에서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시 검사하는 항목은 어느 기관이나 차이가 없이 노동부의 수가 고시에 의한 검사 항목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진단 수가의 고시가 각 진단 기관에서는 수가 고시의 의미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 건강진단에 있어서 검사하는 항목의 규정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었으며, 이 고시는 매년 초에 고시되고 건강진단의 종류에 따른 검사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부 병원에서는 임시나 이직자 건강진단 검사 항목에 대하여 고시 초기에는 혼돈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진폐 건강진단의 정기 건강진단시에는 모든 건강진단 기관이 기왕력 및 작업 경력, 자각 증상 및 타각 증상에 대한 문진이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혈압, 헤마토크리트, 요당 및 요단백, GOT 및 GPT, 그리고 흉부 엑스선 직촬 검사와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임시 건강진단 및 이직자 건강진단시 검사 항목은 조사된 8개 2차 진폐 정밀 건강진단 기관 중 2개 의료기관은 기본 진료 및 소음성 난청 검사와 흉부 엑스선 직촬 검사만 실시하고 있었으며, 다른 5개의 진단 기관들은 '92 수가에서 고시된대로 정기 건강진단시의 검사 항목과 동일한 검사 항목을 이직자 및 임시 건강진단시에도 실시하고 있었다.

2개의 의료기관에서 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 검사 항목으로 기본 진료와 청력검사, 흉부 엑스선 직접 촬영만을 실시한 이유는 '91년도의 진폐 건강진단 수가 고시에서는 그와 같이 고시하였으며 조사 시점이 '92 진폐 건강진단 수가가 고시된 지 5일에서 1개월 사이에 조사되었으므로 변경된 고시 내용에 대한 파악이 늦어졌기 때문인 경우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변경된 고시 내용을 조회하여 확실한 지침을 받기 위하여 확인 중인 경우였기 때문이다.

4.3.2. 정밀진단

정밀진단 비용 수가 고시를 통하여 노동부에서 정한 정밀진단 검사 항목을 검사 항목의 적용에 따라 분류하면 모든 정밀진단 수진자에게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통상 검사 항목과 수진자에 따라 담당 의사의 필요성 인지에 의하여 검사하게 되는 선택적 검사 항목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정밀진단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밀진단시 검사 항목은 '92년도 노동부 고시에 의한 진폐 건강진단 검사 항목의 2차 정밀검사 항목(표 14) 중 통상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조사된 8개의 정밀진단 기관 전체가 모든 검사 항목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택적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모든 건강진단 기관이 그 검사 수행의

곤란을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의 실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단 1개 기관에서는 선택적 검사 항목 중 심전도 검사는 2차 정밀진단 수진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14. 수가 고시에 의한 진폐 정밀진단 검사 항목(1992년)

분 류	검 사 항 목	비 고
혈액학 검사	적혈구 침강속도(ESR)	담당 의사의 필요성 인정시
혈액화학검사	혈액가스 분석	담당 의사의 필요성 인정시
미생물 검사	항산균 도말검사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	담당 의사의 필요성 인정시
면역혈청검사	류마토이드 인자 정량, 페디스토마 파내 반응검사	담당 의사의 필요성 인정시
기 능 검 사	호흡 기능 검사	
	- 기본 폐기능 검사, 호흡 곡선, 안정시·운동시 환 기량, 최대 환기량 예측 치, %최대 환기량	
	- 기류-용적 폐곡선	
	- 잔기량 및 용적가스(He 가스 사용)	담당 의사의 필요성 인정시
	- 기도 저항	담당 의사의 필요성 인정시
	- 일산화탄소 확산능	담당 의사의 필요성 인정시
	- 심전도 검사	담당 의사의 필요성 인정시
방사선 진단	흉부 단순 촬영	
	특수 촬영	담당 의사의 필요성 인정시

출처: 노동부 고시 제 92-7호, '92 진폐 건강진단 수가

정밀진단 의료기관이 이처럼 선택적 검사 항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선택적 검사 항목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실시에 대한 의사의 사유서를 노동부에서 요구하므로 의사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사유서 작성의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의사가 그 검사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둘째, 잔기량 및 용적가스 측정, 기도 저항 측정,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 등의 정밀 폐기능 검사는 대부분의 진단 기관이 실시한 바가 없으며 셋째, 이 검사의 결과는 폐기능 장애도의 판정 자료로 이용되므로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진단 담당의사가 아니라 노동부의 진폐심사의가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할 점이므로 실시하지 않으며 노동부로부터도 이 검사들을 요구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측정 장비를 갖춘 기관도 거의 없었으며 갖춘 경우에도 장비의 상태가 불량하여 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보였다.

4.4. 진폐 정밀진단 기간

현행 2차 진폐 정밀진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간 진단기관에 입원하며 시행되고 있다. 건강진단 검사 항목은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 입원 기간은 건강진단 검사 항목이 감소되기 이전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다.

조사된 모든 기관에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와 토요일의 일정 중 공통적인 사항은 월요일에는 입원 수속 및 입원에 따른 안내를 실시하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에는 매일 1회씩 객담을 수거하여 항산균 진단을 위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모든 진단기관의 공통적인 일정이며 금요일에는 공통적인 일정이 없고 토요일에는 퇴원에 따른 수속을 하는 것이 공통적인 점이다.

이 이외의 일정상 필요한 내용은 진폐 관리구분 소견서 작성을 위한 흉부 임상검사와 분진작업 경력 등에 관한 문진과 흉부 방사선 촬영(전후면 촬영 및 측면 촬영), 폐디스토마 검사, 폐기능 검사이다. 모든 기관이 문진과 폐디스토마 검사는 6일 중 하루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흉부 방사선 촬영과 폐기능 검사

는 주로 2일에 걸친 일정으로 실시하나 3일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흉부 방사선 사진상 진폐의 소견과 폐기능 검사 결과가 상이한 수진자에 대하여 폐기능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일정을 갖고 있었다. 진단 기관별 일자별 정밀진단 검사 일정은 표 15와 같다.

표 15. 요일별 정밀진단 일정 및 검사 항목

요일	기관	일 정 및 검 사 항 목
월요일	가	입원 수속 및 안내, 흉부 방사선 촬영1, 문진
	나	입원 수속 및 안내, 흉부 방사선 촬영1
	다	입원 수속 및 안내, 흉부 방사선 촬영1
	라	입원 수속 및 안내, 디스토마 검사
	마	입원 수속 및 안내
	바	입원 수속 및 안내, 디스토마 검사
	사	입원 수속 및 안내, 디스토마 검사, 문진
	아	입원 수속 및 안내, 흉부 방사선 촬영1
화요일	가	객담 검사1, 디스토마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2, 폐기능 검사1, 문진
	나	객담 검사1, 디스토마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2
	다	객담 검사1, 폐기능 검사
	라	객담 검사1, 폐기능 검사1, 흉부 방사선 촬영1
	마	객담 검사1, 폐기능 검사1, 흉부 방사선 촬영1
	바	객담 검사1, 흉부 방사선촬영1
	사	객담 검사1,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1
	아	객담 검사1, 폐기능 검사1
수요일	가	객담 검사2, 폐기능 검사2, 문진
	나	객담 검사2, 폐기능 검사
	다	객담 검사2, 디스토마 검사

(계속)

라 객담 검사2, 폐기능 검사2, 흉부방사선촬영2
 마 객담 검사2, 폐기능 검사2, 흉부방사선촬영2
 바 객담 검사2, 폐기능 검사
 사 객담 검사2, 흉부 방사선 촬영2
 아 객담 검사2, 흉부 방사선 촬영2

목요일 가 객담 검사3, 폐기능 검사3
 나 객담 검사3,
 다 객담 검사3, 문진
 라 객담 검사3, 폐기능 검사 재검
 마 객담 검사3, 흉부 방사선 촬영3, 폐기능 검사3
 바 객담 검사3
 사 객담 검사3
 아 객담 검사3, 디스토마 검사

금요일 가 폐기능 검사 재검
 나 문진
 다 폐기능 검사 재검, 문진
 라 폐기능 검사 재검, 문진
 마 폐기능 검사 재검, 문진
 바 폐기능 검사 재검, 문진
 사 폐기능 검사 재검
 아 폐기능 검사2

토요일 가 퇴원 수속 및 퇴원
 나 퇴원 수속 및 퇴원
 다 퇴원 수속 및 퇴원
 라 퇴원 수속 및 퇴원
 마 퇴원 수속 및 퇴원
 바 퇴원 수속 및 퇴원, 문진
 사 퇴원 수속 및 퇴원
 아 퇴원 수속 및 퇴원, 문진

5. 토의 - 진폐 건강진단 시행의 문제점

5.1. 진폐 건강진단을 규정하는 법규

진폐 건강진단은 채용시 건강진단, 정기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그리고 이직자 건강진단, 정밀진단 및 응급진단 등이 있으며 각 건강진단은 법, 시행규칙, 예규 그리고 지침에 의하여 정해지고 시행되고 있다.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에 의하여 정해지는 부분도 있다. 시행규칙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예규는 시행규칙에서, 지침은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거나 실시하는 근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진폐 건강진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폐 이환자를 발견하여 관리구분을 정하고 관리구분에 의하여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관리구분을 정하는데 필요한 건강진단은 정밀진단이나 이 정밀진단을 정하는 법규는 법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예규와 지침에서만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2. 정밀진단의 대상

정밀진단의 대상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나 시행규칙의 검사 항목으로 볼 때, 정밀진단의 검사의 내용을 실시하는 대상은 시행규칙에서는 노동부의 진폐심사의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규에서는 진폐판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5.3.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진폐 건강진단 중 정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는 매년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점은 연도 단위로 1회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년도 검사 시기와 당해 연도 검사 시기간의 기간적인 간격은 최단 1개월에서 최장 24개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5.4.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5.4.1. 건강진단 검사 항목의 고시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은 시행규칙에서 검사 항목을 정하고 있으나 고시를 통하여 당해 연도의 건강진단 검사 항목별 수가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의 건강진단 항목은 당해 연도의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즉, 시행규칙에서는 검사 항목을 정하고 있으나 당해 연도의 고시에서 이를 정하지 아니하면 그 검사 항목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검사 항목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고 고시는 단지 시행규칙에서 정하여진 검사 항목에 대한 수가만을 고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밀진단이나 정밀진단의 검사 항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예규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 차원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5.4.2. 건강진단 검사 항목에 관한 시행규칙과 고시간의 차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검사 항목 중 병리검사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5호에서 정한

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검사 항목 중 3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γ -GTP에 대한 검사 항목이 없다.

5.4.3. 검사 항목

5.4.3.1. 흉부 임상검사

이 검사는 시행규칙과 지침에서만 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의, 그리고 지침에서는 정밀진단에서의 흉부 임상검사의 대상과 검사 항목을 정하고 있다.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에서 흉부 임상검사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일반 건강진단 검사 항목 중 병리검사 결과와 흉부 방사선 직접촬영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시행규칙 제 11조 제 1항 제 1호) 병리검사의 검사 항목 중 진폐의 소견을 파악할 만한 검사는 없으므로 이 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는 정밀검사에서 수행되는 사항이므로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에서는 삭제하고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규칙의 정밀진단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밀진단 대상자 전원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4.3.2. 심폐기능 검사

시행규칙에서는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에서의 심폐기능 검사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예규와 지침에서는 정밀진단에 있어서의 심폐기능 검사만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에서의 심폐기능 검사는 실제로 정밀진단 대상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예규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진단에서의 심폐기능 검사를 시행규칙에 추가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에서의 심폐기능 검사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밀진단에서의 폐기

능 검사를 다루고 있는 예규와 지침 간에는 검사 항목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여 예규에서는 검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침에서는 시행규칙에서의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시 폐기능 검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적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치가 필요하다.

또한 시행규칙 제 11조 제 1항 제 5호의 검사 항목 중 가스 교환 기능 검사는 진폐 건강진단에 활용 빈도가 낮은 검사이며 특수 장치와 기술을 요하는 검사이므로 시행규칙에서 그 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정하는 데에는 재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5.4.3.3. 결핵 정밀검사

시행규칙에서의 결핵 정밀검사는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시 시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정밀진단시의 결핵 정밀검사에 대하여는 예규, 지침, 고시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시에는 결핵 정밀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정밀진단시에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기 건강진단은 사업장내에서 실시되므로 시행규칙에서 정한 결핵 정밀검사를 정기 건강진단시에 시행하는 것은 시설과 장비, 검사의 소요 시간 등에 의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결핵 정밀검사의 실시는 현재의 관행대로 정밀진단 실시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밀진단 실시시에 결핵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밀진단시의 결핵 정밀검사에 대하여는 그를 정하고 있는 예규와 지침, 고시 간에 정한 검사 항목이 서로 다르다. 예규에서는 수회의 결핵균 검사, 엑스선 특수 촬영에 의한 검사 및 추적검사, 적혈구 침강 속도 검사 및 루페루클린 반응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결핵 정밀검사, 그리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 결핵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침에서는 객담 검사만을, 고시에서는 항산균 도말 검사만을 정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예규나 지침, 고시에 검사 항목의 일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예규나 지침에서 정한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수가가 반드시 고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항목은 객담 검사, 결핵균 검사, 수

회의 결핵균 검사, 결핵균 배양 검사, 항산균 도말 검사, 엑스선 촬영에 의한 특수 검사와 추적 검사, 적혈구 침강 속도 검사, 투베루클린 반응 검사가 있다. 이 가운데 결핵균 배양 검사는 결핵균의 정확한 감별과 치료약제의 선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검사할 경우에 약 8주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검사 방법이다. 폐결핵의 진단은 수회의 객담 도말 검사를 통한 항산균 검사와 흉부 엑스선 촬영으로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이 가능하므로 결핵의 판정이나 요양 대상의 선별을 위하여 결핵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검사의 목적이나 효율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낮으므로 진단 검사 항목으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객담 검사, 결핵균 검사, 수회의 결핵균 검사, 항산균 도말 검사 등은 각 법규에 따라서 표현은 달리하여 적고 있으나 모두 객담으로부터 결핵균을 검사하는 방법이며, 객담 중의 결핵균 검사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객담 중의 결핵균 검사'로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또한 적혈구 침강 속도 검사는 어떤 특정 질병을 진단하는 특이성이 높은 검사가 아니며 결핵을 진단하는데도 민감도는 높으나 특이성이 높은 검사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적혈구 침강 속도는 교원질 질환 때 증가하므로 진폐증의 섬유화의 경우에도 증가의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적혈구 침강 속도가 정상이고 결핵의 별다른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결핵이 아님을 입증하는데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다. 따라서 결핵의 정밀진단을 위한 검사는 아니므로 통상의 검사에서는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투베루클린 반응 검사는 결핵균에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나 우리나라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서도 결핵의 자연 감염이나 BCG 접종에 의하여 대부분이 양성 반응을 보이므로 결핵을 진단하는데 있어서의 특이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진폐증 진단의 결핵 정밀진단 검사 항목으로의 의의는 매우 적다.

5.4.3.4. 결핵 이외의 합병증 검사

결핵 이외의 합병증 검사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는 정기·임시·이직자 건강

진단 실시시에 있어서, 예규에서는 정밀진단 실시시에 있어서의 그 검사 항목을 정하고 있다. 이 검사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시의 다른 검사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정밀진단의 실시시에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상에 정밀진단 규정의 추가와 동시에 정밀진단의 검사 항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검사 항목이다.

이 검사는 비결핵성 합병증의 유무를 구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예규에서 적고 있다. 이는 폐장의 합병증이 결핵과 유사하지만 결핵에 의한 합병증이 아닌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검사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흉부 임상검사나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는 활동성 결핵의 소견을 보이거나 객담 검사 결과로서 결핵균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그 소견이 결핵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합병증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시행규칙이나 예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항목은 담에 관한 검사, 결핵균 검사, 엑스선 특수 촬영에 의한 검사, 단층상 촬영 등이다.

5.4.3.5. 기타 검사

고시에서는 정밀진단시 면역 혈청 검사로 폐디스토마에 대한 피내 반응 검사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류마토이드 인자의 정량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폐디스토마에 대한 피내 반응 검사의 의의는 비결핵성 합병증의 유무를 진단하는 검사 항목으로 결핵 이외의 합병증 검사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류마토이드 인자에 대한 정량검사는 탄광부진폐증이나 규폐증과 함께 동반되기도 하는 카프란 증후군의 검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거나 진폐증에서 카프란 증후군을 구분하여야 하는 의의가 크지 않으며 카프란 증후군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가 없으므로 검사의 실효성의 의문이 있으며 류마토이드 인자 역시 특이도가 낮은 검사이므로 정상인 탄광부에서도 13% 정도의 양성률을 보이며, 탄광부진폐증자의 경우 20-35%의 양성율을 보이므로 특이도가 낮은 검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량검사 이전에 정성검사를 실시하고 정성검사서 양성자에 한하여 정성검사

를 실시하는 것이 검사의 편의성과 비용의 절감면에서 타당하리라고 본다.

5.5. 진폐판독위원회

예규에서는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결과 진폐 유소견자로 진단된 사람에 대하여 정밀진단의 실시 여부를 판정하는 진폐판독위원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폐판독위원회에 대하여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방사선 전문의 2인과 진폐 담당의 1인으로 한다는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 뿐이며(제 13조 제 1항), 이들의 근무 형태나 근무지 등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조사된 정밀진단 기관 중 일부의 기관은 지역적인 특성 등에 의하여 진폐 담당의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사로 선임하고 있으나 진폐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방사선과 전문의 2명 중 1명 또는 2명 모두를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선임하지 못하고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타지역의 의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위원간의 거리가 대단히 멀므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취합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규정에 의한 7일 이내에 진폐 정밀진단 대상을 판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진폐판독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그러므로 한 지역에 구성된 진폐 판독위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또는 가까운 지역 내에서 진폐판독위원회를 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나 다른 단체에서 진폐판독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폐판독위원으로 가용한 방사선과 전문의를 많이 배출하거나 자주 배출하여 임용된 판독위원이 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5.6. 폐기능 검사의 실시

폐기능 검사는 진폐증자의 장애도를 판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이다. 그러

므로 신뢰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검사자의 자질과 검사치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폐기능 검사 담당자에 대하여 의료기사법에서는 임상병리사가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의 개정이 근년에 이루어져 폐기능 검사를 교과 과목으로 배운 임상병리사는 아직 배출되지 않은 실정이며, 진폐 건강진단의 경우 이 검사의 담당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없으므로 측정자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폐 정밀진단 기관의 폐기능 검사 담당자에 대한 실무 교육과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검진 기관에서 사용하는 폐기능 검사 장비가 상이하므로 검사 장비에 따른 결과치 판정에 대한 정도관리 차원에서의 관심이 요망된다.

폐기능 검사에 대하여 거의 모든 2차 정밀진단 기관이 호소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체력 또는 폐기능이 극도로 악화되어 폐기능 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수진자에 대하여 대신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진단기관에서 동맥혈 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검사 결과가 진폐심사의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고 폐기능 검사 재검이 지시되어 결국은 폐기능 검사 자료의 미흡으로 진폐 관리구분의 판정이나 장해 등급의 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수진자를 위하여는 진폐 관리구분이나 장해 등급 판정을 위하여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 항목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7. 진단 기관의 수익 및 수가 고시

2차 정밀진단은 일주일 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 진단 기관에 수명 내지 수십명 단위로 동시에 정밀진단을 위하여 입원하게 된다. 이 때 정밀진단 수진자의 인원을 정밀진단 기관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 후 그 인원내 적당한 수가 수진받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진단 기관의 편의를 고려할 때 가능한 범위에서 정밀진단 의뢰 인원을 일정

하게 하여 진단 기관의 병상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석탄산업 합리화 등으로 폐광하는 광업소가 많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진폐 건강진단 수진자의 수도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2차 정밀진단 기관의 예상이다. 따라서 진폐증 환자의 요양이나 진폐증의 진단을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부 기관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진단 수입의 감소에 대하여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92년도 진폐 건강진단 수가가 통상적인 수가에 있어서 1 수진자당 약 4만원 이상이 감소되어 앞으로의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들이 진폐증 진단의 병상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폐 건강진단은 매년 3월에 실시되므로 당해 연도 수가 고시는 3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8. 병력 확인

진폐 업무 처리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과거 정밀진단시 진폐 병형과 비교하여 진폐 병형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합병증의 소견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폐 병형의 변화와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로서 정밀진단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과거의 병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흉부 방사선상의 진폐 병형은 동일한 사진을 동일한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에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에는 판독자간의 오차가 커질 가능성은 더욱 증대된다. 따라서 병력의 확인 사항 가운데 병형 변화의 확인이 중요한 경우, 이전 진단시의 방사선 사진과 최근의 방사선 사진을 동일한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여 병형 변화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병력 확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병형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고령화 등에 의하여 증상(폐기능 등의)이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반드시 병형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만 정밀진단을 수진하도록 하기보다는, 진폐 유소견자로서 병형의 변화가 없을 지라도 매 2년이나 3년 마다 정밀진단을 수진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개선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병력 조회 절차에 의하여 정밀진단이 의뢰되는 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2차 정밀진단 대상자가 1차 건강진단 실시 후 정밀진단을 수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보다 단축시키기 위하여 병력 확인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9. 진폐 건강진단 기관의 지정 기준

이 법의 시행규칙이 진폐 건강진단 제도 및 그 시행에 관한 조사 결과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되거나 시행규칙 중 진폐 건강진단 검사 항목이 개선되는 경우 이 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법의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진폐 건강진단 기관 지정 기준도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분진작업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 건강진단 기관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강진단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기관은 동법에서 정하는 분진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그러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진폐 건강진단 기관 지정 기준은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등 1차적 진폐 건강진단과 정밀진단의 검사 항목이나 검사의 목적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진폐 정밀진단에 관한 규정이 시행규칙에서 다루어지기 위하여는 지정 기준을 이원화하여 정기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이직자 건강진단 등 1차적 진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 기준과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2원화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5.9.1. 1차 진폐 건강진단 기관의 지정 기준

1차 진폐 건강진단 기관의 기능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건강진단과 임시 건강진단 및 이직자 건강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일반 건강진단 검사 항목의 검사를 통하여 일반 질병의 이환 여부 및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을 실시하여 진폐 소견의 유무를 판정하여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폐판독위원회를 통하여 진폐 정밀진단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시행을 위한 최소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9.1.1. 인력

- 가.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방의학 및 방사선과 전문의 각 1인
- 나. 방사선 기사 1인
- 다. 간호사 1인
- 라. 임상병리사 1인

5.9.1.2. 시설

- 가. 진료실
- 나. 흉부 방사선 촬영실 및 현상실
- 다. 임상병리 검사실

5.9.1.3. 기계 및 기구

- 가. 시력 검사기
- 나. 청력 검사기

- 다. 흉부 방사선 촬영기 및 현상기
- 라. 생화학 분석 장치
- 마. 헤마토크리트 측정 장치 또는 헤모글로빈 측정 장치
- 바. 원심분리기

5.9.2. 2차 진폐 건강진단 기관 지정 기준

2차 진폐 건강진단 기관은 진폐판독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밀진단 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폐기능 검사와 결핵균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와 입원 시설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5.9.2.1. 인력

- 가.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방의학 및 방사선과 전문의 각 1인
- 나. 결핵 전문의 또는 호흡기 내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1인
- 다. 방사선 기사 1인
- 라. 간호사 1인
- 마. 임상병리사 2인, 단, 이 중 1명은 폐기능 검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5.9.2.2. 시설

- 가. 진료실 및 폐기능 검사실
- 나. 흉부 방사선 촬영실 및 현상실
- 다. 임상병리 검사실
- 라. 입원실

5.9.2.3. 기계 및 기구

가. 전산화 폐기능 검사 장치(기류-용적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것) 또는 플레티스모그래피

나. 흉부 방사선 촬영기(500 mA 이상) 및 현상기

다. 생화학 분석 장치

라. 헤마토크리트 측정 장치 또는 헤모글로빈 측정 장치

마. 항산균 감별을 위한 현미경

바. 원심분리기

6. 요 약

진폐 건강진단 제도와 그 시행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법규 및 제도와 시행상에 여러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여건과 다른 관련 법규와의 형평, 과학적인 면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한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한 개선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진폐 정밀진단의 대상이나 검사 항목 등 정밀진단에 관한 사항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단, 이 시행규칙에서는 진폐 관리구분의 대상이나 검사 항목에 대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시행과는 차이점이 많다. 그러므로 진폐 정밀진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그 절차와 대상, 그리고 검사 항목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진폐정밀 진단의 대상을 시행규칙에서는 관리구분을 위한 검사의 대상으로 노동부의 진폐심사의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폐판독위원회에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이 대상의 선정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정기 건강진단 실시 시기에 대하여는 현재의 규정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라. 각 진폐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수가 고시에서는 검사 항목의 수가만을 고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 흉부 임상검사 등 시행규칙상의 진폐 건강진단 검사 항목은 위와 같은 제도 및 절차의 개선 후에 이에 맞도록 수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검사 항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바. 폐기능 검사는 진폐증자의 장해도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검사자의 자질 향상과 검사치의 표준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능 검사 곤란자에 대한 대체 검사 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 진폐판독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 정밀진단 대상을 정하는데 있어서 병력확인 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앞에서 지정한 진폐 건강진단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기관 지정 요건을 동시에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